

창업을 위한 각종 신고

사업자등록 / 에스프로(구매안전서비스) / 통신판매업신고

창업전략팀

목차

1	인허가 관련 신고 절차	인허가 관련 신고 절차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란 / 필요서류 / 발급방법
3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개인 발급 / PG사 발급
4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란 / 필요서류 / 발급방법

인허가 관련 신고 절차

사업자등록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통신판매업신고

	인근 세무서
직접방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인터넷발급	

	은행 개인쇼핑몰 에스크로
직접방문	
	PG사 발급
인터넷발급	

	관할구청
직접방문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발급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에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세적에 관한 증표**라고도 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로 사용하는 PG 등의 결제시스템을
연동시키려면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대부분의 창업 준비자들이 본격적인 사업시작 전 등록.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로 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

또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매출을 발생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은 필수

[illegible]

- [illegible]

발급방법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로 사용하는 PG 등의 결제시스템을 연동시키려면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직접방문

1. 인근 세무서 방문
2.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사업자 등록

등록 접수 후 약10~15분 정도
지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



인터넷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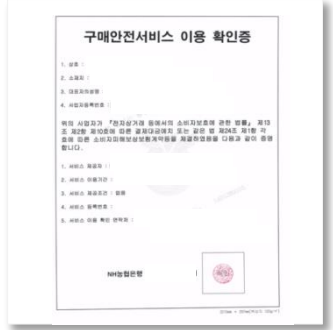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2.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내 '신청/제출' 클릭
3. '사업자 등록 신청 / 정정' 클릭
4.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5. 양식에 맞춰 기본적인 인적사항 입력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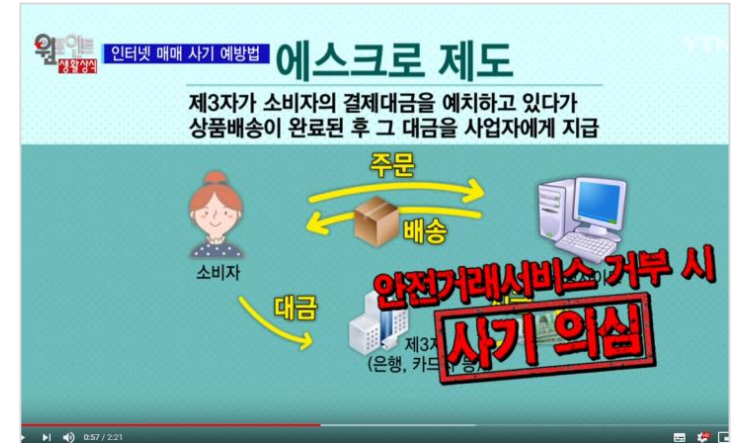
개인발급

1.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한 후 상품이 완전히 인도된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
2.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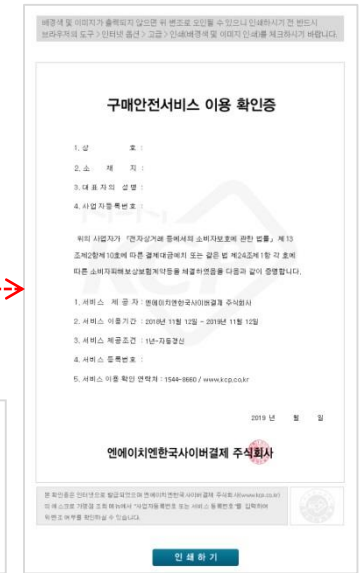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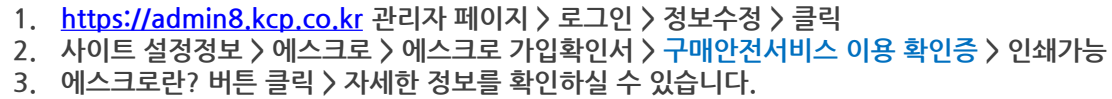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1.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은행 방문
2. 기업통장 개설(기업공인인증서 4,400원)
3. 집으로 복귀
4. 기업 बैं킹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프로**) 신청
5. 은행 방문 or 프린트
6.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에스프로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d8Z2dhB7c0E>

PG서비스(ex: KCP) 가입 시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통신판매업신고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행정 서류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면 꼭 필요한 서류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로 사용하는 PG 등의 결제시스템을
연동시키려면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음.

2021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현재 법안	개정 법안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최근 6개월 기준)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직전 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필요서류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로 사용하는 PG 등의 결제시스템을 연동시키려면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통신판매업신고 필요한 서류 세가지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에스프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참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발급방법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로 사용하는 PG 등의
결제시스템을 연동시키려면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

신청·조회·발급

분류

다분류 전체

중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기관

기관분류 선택

제공기관 전체

☐ 모바일신청 가능서비스

☒ 민원서비스

☒ 정부서비스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결과 내 재검색

신청순 | 정확도순 | 가나다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전기통신매체 광고를 통해 소비자 및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
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청정보(전화번호, 주소 등)
원문서비스 | 공정거래위원회 |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



직접방문

- 1. 관할 구청 방문
- 2.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
- 3. 약 3일 후 발급



인터넷발급

- 1. 정부24(www.gov.kr) 접속
- 2. 상단 메뉴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신청/조회/발급’ 메뉴 클릭
- 3. 검색창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4.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 [신청] 버튼’ 클릭
- 5. 로그인 후 신청

Thank you

